

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1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0. 2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5. 10. 2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10. 20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배진열)

가. 개정이유

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, 소상공인이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소상공인 융자기관 범위 확대: 정의에 “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” 단서조항 신설(안 제2조제2호)

- “금융기관”

· (기존): 「은행법」 제2조에 따른 은행

→ (개정): 「은행법」 제2조에 따른 은행 +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(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신협, 새마을금고)(안 제2조제3호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2)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3) 협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의견 미반영(복지지원과-30063(2025. 8. 6.)호)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제16조(위원회의 구성) 제2항 ⇒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제16조(위원회의 구성) 제2항 ⇒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 미반영 ⇒ 상위법인 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별도 명시 없이 준용되므로 미반영함.

4) 기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292호

- 예고기간: 2025. 7. 30.~2025. 8. 19.(20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○ 개정 목적

-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이용을 원활하게 지원하고,
-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2조(정의) 제2호: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 신설
- 안 제2조(정의) 제3호: 현행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외에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신협,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

○ 관련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등

○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여, 자금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서 타당성이 인정되고
- 또한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개정에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고)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보전액 지급 (25. 9월 현재 836여 건, 175백만 원)

지원대상	○ 고성군에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- 그 외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융자한도 / 지원	- 5천만 원 - 지원내용: 신용보증서 발급, - 이자 보전 지원: 3.7% 이내

※ 현재 협약 융자 금융기관: NH농협 고성군지부, 경남은행 고성지점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0. 2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